

광양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

의안 번호	20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5. 21
제 출 자 : 광 양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부과·징수한 과징금 중 일부(도 40%, 시 60%)를 기금으로 조성 운영코자 광양시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를 제정코자함.

2. 주요골자

- 식품진흥기금 설치목적, 운용 등 기본적 사항
- 시설개선자금 등 기금용자에 관한 사항
- 기금관리 금융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3. 제정 조례안 : 별첨

4. 관계 법령 :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3조 규정

5. 관계부서의견 : 의견 없음

6. 예산 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 예고

- 기간 : 2001. 3. 7 ~ 3. 30 (23일간)
- 방법 : 시보 제12호(2001. 3. 7) 및 시 홈페이지 게재
-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광양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광양시 식품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영업자”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 하는 자를 말한다.
2. “시설개선자금”이라 함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자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.

제3조(기금의 재원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
2.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
3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4. 기타 영에서 정하는 수입금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법 제71조제3항 및 영 제42조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.

제5조(기금관리 금융기관의 지정 및 운영·관리) ①광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되, 기금관리 금융기관은 광양시 금고(이하 “시금고”라 한다)로 한다.

②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회계관계공무원)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각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.

1. 기금출납명령관 : 보건소장

2. 기금출납공무원 : 업무담당주사

②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

제7조(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) ①시장은 기금의 조성·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, 당연직 위원은 사무과장으로 하며,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기금관리에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자
2.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

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.

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의 운용계획
2. 기금의 조성, 적립, 운용 및 결산
3. 기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상 필요한 사항

제9조(위원회의 운영등)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.

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

행한다.

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용자사업) 시장은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.

제11조(용자금의 대여) 시장은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시금고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.

제12조(용자의 조건 및 용자한도) 대상자의 선정, 시설개선 용자금의 조건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13조(실비변상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사후관리) ①시장은 지원자금의 관리실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은 자를 대상으로 이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용자금을 받았거나 용자사업 목적 이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용자금의 일시상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5조(보고 등) ①시금고의 장은 매월 기금에 관련된 운영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금고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.

제16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·운영 등에 관하여는 광양시기금관리기본조례 및 광양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용자된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.
- ③(기금계좌설치에 관한 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계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.